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-|------|
| 의 안 번호 | 1131 |
|-----------|------|

2016. 04. 26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16. 4. 19. 강구덕 의원 발의 (2016. 4. 20. 회부)

2. 제안이유

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“범위 안에서” 및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산식”을 “계산식”으로, “약간”을 “몇”으로, “해축”을 “위축 해제”로,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, “해외”를 “국외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함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21조, 제22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- 다만, 안 제9조제4호에서 “서기 약간 명을 두되”를 “서기 몇 명을 두되”로 하는 것보다는, “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”로 하는 것이 문맥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| | |
|---|--|
| <p>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</p> <p>3.~5. (생략)</p> |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범위에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6조(총괄계획가의 위촉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6조(총괄계획가의 위촉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대 ----- 해서는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(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,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합</p> | <p>제8조(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|

| | |
|---|---|
| <p>계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 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.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<u>산식</u>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 초 대지면적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산식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9조(사업협의회)의 구성·운영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 기 <u>약간</u> 명을 두되, 간사는 사업협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 관이 되며,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 다.</p> <p>5.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<u>대하</u> <u>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 또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6. (생략)</p> | <p>제9조(사업협의회)의 구성·운영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몇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<u>대해</u> <u>서는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|--|
| 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생략)</p> <p>⑨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<u>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⑩ (생략)</p> <p>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<u>치료를 요하는</u>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<u>해외여행</u>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2. 위원 스스로가 <u>해촉</u>을 원할 때</p> <p>3.~4. (생략)</p> | <p>제21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</p> <p>①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에</u> <u>서</u> ----- --.</p> <p>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<u>할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치료가</u> <u>필요한</u> ----- <u>국외</u>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위촉 해제를</u>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<u>의하여</u> 제척의 결정을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 | <p>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|